

제403회 정례회
'22. 9.16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2년 9월 7일
- 회부일자: 2022년 9월 8일

3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
- “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”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위 치 : 충주시(예정) ※ 관할구역 : 충주, 제천, 단양
- 사 업 비 : 103,326천원(국비 51,663^{50%}, 도비 51,663^{50%}) * '22년 하반기
- 위탁범위 :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전반
- 위탁기간 : 2022. 11. 1. ~ 2025. 10. 31. (3년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
- 수탁자격 :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
- 위탁사무
 -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 -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,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
 -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
 -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·운영
 -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

-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
-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
-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등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본 동의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제2항에 따라, 충청북도 내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·보호·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□ 장애인복지법

제59조의11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)

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·보호·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둔다.

1.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2.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,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
3.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
4.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·운영
5.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기관의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, 먼저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¹⁾에 따른 위탁 대상사무의

1)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

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고, 제4조의2²⁾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.

- 본 기관의 주요 사무는,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,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,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,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 회복 등으로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제3호에 따른 ‘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’에 해당된다 할 수 있고,
-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, 헌신성 및 장애인인권 감수성 등이 필요한 바, 관련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.
- 또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³⁾에 본 기관의 설치·운영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현재 충북에서는 2017년부터 동일한 사무를 수행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간위탁으로 관리·운영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됨.

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
 4.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- 2)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3. 경제적 효율성
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- 3) 「아동복지법」 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·운영,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,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,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기관의 민간위탁 운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‘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’에 해당되는 바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,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 상 만전을 기하고,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·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들이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임.